

## 경운대학교 창조융합센터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'우리대학교'라 한다) 창조융합센터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창조융합센터는 경운대학교 창조융합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
2. 지역·국가 전략산업인 IT, Big Data, AI, 3D 프린팅 등 첨단 스마트분야 중소·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
3.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상호간 협력활동 또는 각 분야별 융합활동 지원
4. 우리대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준비 지원
5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4조(조직과 업무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우리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창조융합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5조(인력구성)** ① 센터의 업무 및 사업수행을 위해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,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관련 인사 규정에 따른다.

**제6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기부금 및 보조금, 연구사업의 수익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**제7조(회계)** 센터의 회계는 우리대학교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.

**제8조(회계년도)**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9조(보칙)**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리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